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9의5] <신설 2024. 5. 27.>

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(제36조의7제2항 관련)

1. 표시 방법

가.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한다.



인증번호 :



Certification Number :

나.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, 인증번호, 가축의 종류, 농장 소재지(이하 이 표에서 “인증농장정보”라 한다)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- 1)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한 경우로서 축산물가공품포장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: 여러 농장 중 일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지의 다른 표시면 또는 홈페이지,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홈페이지, QR코드 등 포장지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려면 포장지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개수 및 인증농장정보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.
- 2)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혼합 또는 분쇄하여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으로서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: 포장지에 인증농장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제품에 사용한 인증농장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(로트) 별로 기록·유지해야 한다.

2. 표시 기준

제1호가목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.

가.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(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: W)를 기준으

로 세로 길이는 $0.95 \times W$ 의 비율로 한다.

나.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(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간격은 $0.1 \times W$ 로 한다.

다.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$0.55 \times W$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,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$0.75 \times W$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.

라.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.

마. 표시 도형의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
바.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,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,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.

사.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"동물복지", "(ANIMAL WELFARE)", "ANIMAL WELFARE"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같게 하고, 하단의 "농림축산식품부"와 "MAFRA KOREA"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.

아. 배색 비율은 녹색 C80+Y100, 파란색 C100+M70, 빨간색 M100+Y100+K10, 검은색 C20+K100으로 한다.

자.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차.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
카.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.

타. 표시 도형과 함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, 표시글자는 동물복지, 동물복지축산, 동물복지축산물, 동물복지○○, 동물복지축산○○ 또는 동물복지 사육 ○○으로 표시한다.

비고

1.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2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 해당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,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.
2.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3. 이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